#### [회의록]제191차 이사회 회의록 - 강원의료사협72차

- 1. 회의일시: 2023년 10월 12일(목) 오후 12시 30분
- 2. 회의장소: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활동실(조합 3층 內)
- 3. 회의참석: 이광희 이사장, 박준영 부이사장, 김은주, 차윤정, 김유미, 강숙임, 장태선, 김선기, 천혜란, 최효심, 김종희, 양종천, 김소민, 서연남 (이상 이사, 총 14명) 배 석 : 신승훈 전무

#### 4. 성원보고

- 이광희 이사장(이하 의장)이 성원 18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하고 제191차 정기 이사회의 개회를 오후 12시 30분에 선언하다.

#### 5. 전차회의록

- 의장이 9월 14일(목) 제190차 이사회 전차회의록를 낭독하고 의견을 물은바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승인하다.

#### 6. 보고안건

- 의장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고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신승훈 전무에 게 안건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.
- 신승훈 전무가 논의안건 및 보고안건을 보고하다.
- 차기 이사회는 <u>11월 9일(목) 오후 12시 30분</u>에 개최하기로 하다.

#### 7. 논의안건

## □제1호 의안 : 2023년 9월 신규 조합원 및 가족 조합 이용 승인 건

#### 1. 제안 배경

-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신규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조합 보건-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조합 공급고 산정의 100분의 50범위를 유지함.

- 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제58조(사업의 이용)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  - 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  - 2.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  - 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  - 4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  - 5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  - 6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
- 7. 조합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 조합에 한한다)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.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.거소.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
  - 8.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
-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.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<u>조합</u>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.
- 3. 제안 내용
- 9월 신규 조합원(7명, 9명(가구원)): 이미연, 김미희(조규옹, 조주희, 조주현), 마달막, 김영애, 남정아(문서인, 문수인), 구혁(동은아, 구해민), 최창헌(최승만, 박경호)
- (9월 기준) 신규 조합비 조합원(216명) : 명단(별도 첨부) 신규 합계 223명(세대) / <u>\*총조합원수 : 5,312명 = 5,089명(8월 말 기준)+신규 223</u> 명(9월)
- 이상의 조합원과 그 가족에 대한 조합 의료기관 이용을 승인 주문함.
- 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- 추가 의견 -

### □제2호 의안 : 밝음신협과 함께하는 사회적예탁금 가입의 건

#### 1. 제안 배경

- 사회적예탁금이란? 예금가입자와 신협이 함께 재원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정기예금 상품
- (가입자) 정기예금 금리 보다 0.5% 낮은 금리로 예금 가입, 예) 4% 금리시 3.5%만 적용
  - (신협) 0.5%의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총 1%의 재원 조성 (신협중앙회 사회공 헌재단)
- 현)2022년 12월 16일 1,000만원의 예탁금을 가입하였고, 23년 12월 16일에 만기 예정
- 예) 10억원 조성시 1%인 1.000만원의 예탁금 발생

#### 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## 3. 제안 내용

- 밝음신협과 함께하는 사회적예탁금 3,000만원(1년) 가입 승인 요청.(별첨 : 사회적 예탁금 리플렛)
  - \*기존 1,000만원의 재예탁 및 신규 예탁 2,000만원을 하는 것임.
- 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- 추가 의견 -

## □제3호 의안 : 제 4기 대의원 간담회 추진의 건

- 1. 제안 배경
- 현재 조합 제4기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임.
- 2023년 제9차 정기대의원 총회(3월 28일) 당시 제3호 의안 "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위한 연대 협력 비전 결의의 건" "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위한 연대 협력 비전 결의의 건" 으로 수정 제안하고 "6개월 후 임시 총회 또는 대의원 간담회 등 을 통해 경과보고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"에 대하여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, 노혜정 대의원의 동의,

임종호 대의원의 재청으로 수정 제안 안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.

- 조합 제4기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1월 1일 ~ 24년 12월 31일 까지임.
- 대의원 간담회 개최를 통한 경과보고 및 의견 수렴 진행이 필요한 시점임.

#### 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3. 제안 내용
- 11월 중 대의원 간담회 일정 및 장소 확정 \*임원 참석 필요

-> <u>결정 사항</u> : 11월 24일 오후 7시로 일정을 확정하고 장소는 빠른 시간 내에 <u>결정</u>하는 것으로 한다.

#### - 추가 의견 -

송년회를 겸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.

송년회때 추진 경과보고와 경험, 느낌 등을 나누는 시간과 대의원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부분도 다뤄졌으면 좋겠다.

## □제4호 의안 : 2023 강원의료사협 임원학교 추진의 건

- 1. 제안 배경
- 현)조합의 임원 구성은 18명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2024년 총회에 임원 선출이 예정되어 있으며, 원활한 의사결정구조와 향후 추진방 향에 있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으로 갖추어야할 기본 지식과 의료사협 운영의 이해를 돕는 과정을 추진코자 함.

#### 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3. 제안내용
- 2023 강원의료사협 임원학교 추진 승인(별첨자료. 의료사협 창업교육과정)
- 임원학교 수료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(임원 선출시 가점 등)

-> 결정 사항 : 임원학교 추진에 있어 의료사협 임원학교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참여하는 임원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비중있게 다루기로 하다.

<u>임원프로그램 기획은 김선기 이사가 맡는 것으로 하다.</u>

주최는 강원의료사협이 주관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하는 것으로 하다.

- 추가 의견 -

임원학교가 아닌 임원 워크숍이 필요하다.

임원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주민운동연구원을 추천한다.

## □제5호 의안 : 존엄케어 요양시설(요양병원, 요양원) 설립 추진의 건

- 1. 제안 배경
- 존엄케어 요양시설 설립과 관련 조합 재산의 가용 범위 및 향후 설립 가능성 등 을 타진하며 추진해옴.
- 현 상황) 횡성군 가담리 470, 550은 기부(700평)를 받고, 가담리 467, 468, 469는 매매(750평)하여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. (전체 1,400여평)
- 매매땅은 평당 43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 함. (3억2천2백5십만원 예상)
- 농지임으로 조합에서 바로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며, 농업회사법인 또는 개인 매매 등 행정절차 고려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법을 논의 중인 상황 임.
- 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3. 제안내용
- 존엄케어 요양시설 설립 추진 여부 결정(횡성 가담리 중심)
- -> 결정 사항: 설립 추진에 있어 다각도로 검토 후 1안, 2안, 3안 등 추진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가 되면 정기 이사회 또는 이 안건에 대한 별도의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한다.
- 추가 의견 -

# □기타 논의 안건

- 제안 내용
- -> 결정 사항 :
- 추가 의견 -

# 서 명

의장 이광희 이사 박준영
이사 김은주 이사 차윤정
이사 김유미 이사 천혜란
이사 장태선 이사 김소민
이사 강숙임 이사 김종희
이사 김선기 이사 서연남